[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펀 드 명	BNK튼튼중기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전면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 클래스 신설 등
효 력 발 생 일	2024년 03월 07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문구 조정	투자자 유의사항 <삭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신설> ·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전략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및 신용분석 및 상대가치분석, 금리수준, 수익률곡선 형태 등을 활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KIS합성중기지수[1-5Y]*100%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문구 삭제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신용등급이 우량한 중기채권(평균 채권만기(듀레이션) 약 2.5년 수준) 투자를 통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삭제>
투자비용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C-w, C-P, C-P2, S - 환매수수료, 기타비용 <문구 추가>	<문구 삭제> <문구 삭제> - 동종유형보수,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춘배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구경서	* 2024.02.20 기준으로 업데이트 -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승건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문성호
주요투자 위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	문구 추가	<문구 추가>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문구 추가>	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문구 추가	판매수수료 <문구 추가> 기타 <문구 추가>	판매수수료 -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문구 조정	투자자 유의사항 <삭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신설> ·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전략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및 신용분석 및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상대가치분석, 금리수준, 수익률곡선 형태 등을 활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KIS합성중기지수[1-5Y]*100%
집합투자기구 특징	문구 삭제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신용등급이 우량한 중기채권(평균 채권만기(듀레이션) 약 2.5년 수준) 투자를 통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삭제>
투자비용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C-w, C-P, C-P2, S - 환매수수료, 기타비용 <문구 추가>	<문구 삭제> <문구 삭제> - 동종유형보수,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춘배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구경서	* 2024.02.20 기준으로 업데이트 -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승건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문성호
주요투자 위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	문구 추가	<문구 추가> <문구 추가>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문구 추가	판매수수료 <문구 추가> 기타 <문구 추가>	판매수수료 -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신설	<신설>	- C-Pe, C-P2e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명시)	가. ~ 마. (생략) <신설>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문구 정정	(1) 모집기간 : 모집개시일은 2016년 10월 24일 예정이며,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생략) (3)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현행과 동일)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신설	<신설>	- C-Pe, C-P2e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신설>	- 2024.03.07: 전면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 클래스 신설 등)
4.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12층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21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운용전문인력 변경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춘배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구경서	* 2024.03.07 기준으로 업데이트 -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승건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문성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문구 정정 및 클래스 신설 - 자투자신탁 추가	가. (생략) 나. 종류형 구조 - 판매수수료, 보수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모자형구조 <자투자신탁 추가> <자투자신탁 추가>	가. (현행과 동일) 나. 종류형 구조 <삭제> 주1) 각 종류별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구조 -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BNK튼튼배당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가. 투자 대상 ① ~ ② (생략)	가. 투자 대상 ① ~ ② (현행과 동일)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 ~ 2. (생략)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① ~ ⑦ (생략) ⑧ 증권의 대여 <주석 추가> ⑨ 증권의 차입 <주석 추가> 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1. ~ 2. (생략) <신설> ⑫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 ~ 2. (현행과 동일)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① ~ ⑦ (현행과 동일) ⑧ 증권의 대여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⑨ 증권의 차입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1. ~ 2. (현행과 동일)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⑫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문구 정정 및 문구 추가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 집합투자재산 중 80% 이상을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에 투자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중기채권(평균 채권만기(듀레이션) 약 2.5년 수준) 투자를 통하여 이자수익	가. 투자 전략 - 집합투자재산 중 80% 이상을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에 투자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중기채권(평균 채권만기(듀레이션) 약 3년 수준) 투자를 통하여 이자수익과

		과 함께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주1) KIS합성중기지수(1-5)는 KIS채권평가에서 발표한 한경-KIS-Reuters 종합채권지수에서 잔존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국공채 및 통안채, AA- 이상 특수채, 은행채, 금융채, 무보증 회사채로 구성한 지수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수익률과의 공정한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목표듀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 및 모투자신탁의 목표듀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주2)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문구 추가> 나. (생략) <문구 추가> (이하 생략)	함께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주1) KIS합성중기지수[1-5Y]는 KIS채권평가에서 발표한 한경-KIS-Reuters 종합채권지수에서 잔존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국공채 및 통안채, AA- 이상 특수채, 은행채, 기타금융채, 무보증 회사채로 구성한 지수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수익률과의 공정한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목표듀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 및 모투자신탁의 목표듀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주2)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표] 비교지수의 수익률 추이 나. (현행과 동일) ◈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집합투자규약의 환매 연기 및 상환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채권시장이 급변하여 펀드 내 편입 자산에 대한 비상 위기대응이 필요할 경우, 당사 내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기발생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운용담당부서는 물론, 필요시 전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투자위험 추가	가. ~ 나. (생략) 다. 기타 투자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기타 투자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

		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험 추가>	-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추가>	- 기타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제안서 작성일 현재 입수한 범위내에서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본 펀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 중 국내채권 등에 주로 투자자하는 모투자신탁에 80% 이상 투자하여 우량 중기채권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자산 및 수익률 변동성(0.85%)을 감안하여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 중 국내채권 등에 주로 투자자하는 모투자신탁에 80% 이상 투자하여 우량 채권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경과 시]	<삭제>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클래스 신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매입 (1) (생략)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생략) (4) ~ (5) (생략) 나. 환매 (1) (생략)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 (4) (생략) <신설>	가. 매입 (1) (현행과 동일) (2) 종류별 가입자격 - C-Pe, C-P2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현행과 동일) (4) ~ (5) (현행과 동일) 나. 환매 (1) (현행과 동일)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D+2)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 (4) (현행과 동일)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

		(6) ~ (8) (생략) 다. (생략)	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 (9)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 · 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나. (생략)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 · 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나. (현행과 동일)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판매보수 변경 (Class S) - 클래스 신설	1) ~ 2) (생략)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신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Class S : 판매보수 0.05% <신설> - <신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신설>	1) ~ 2) (현행과 동일)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C-Pe, C-P2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Class S : 판매보수 0.048% - C-Pe, C-P2e * 2024.02.20 기준으로 업데이트 ※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C-Pe, C-P2e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가. 이익배분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	가. 이익배분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

		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나. 과세 투자소득에 ---(생략)--- 나누어집니다. (1) ~ (3) (생략)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Class C-P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1일 이후 납입액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시 과세	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나. 과세 투자소득에 ---(생략)--- 나누어집니다. (1) ~ (3) (현행과 동일)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Class C-P 및 C-Pe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 수령요건: 55세 이후 <삭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lass C-P2 - 세액공제: -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lass C-P2 및 C-P2e 가입자 -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이하 생략)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2024.02.20 기준으로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문구 정정 -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 채권평가회사 추가 및 주소변경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생략) (2) 주요업무 1) (생략)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생략)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현행과 동일) (2) 주요업무 1) (현행과 동일)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층 ☏ 02-2180-0400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www. shinhanaitas.com (2) (생략) 다. (생략)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한국자산평가 - NICE P&I - KIS채권평가 - 에프앤자산평가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신설> (2) (생략)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2)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한국자산평가 - NICE P&I - KIS채권평가 - 에프앤자산평가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이지자산평가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 회사 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www.egap.co.kr (2) (현행과 동일)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정기보고서 (1) (생략)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가. 정기보고서 (1) (현행과 동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생략) 나. 수시공시 (1) (생략)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 1. ~ 7. (생략)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생략) (3) (생략)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1) (현행과 동일)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생략)--- 합니다. 1. ~ 7. (현행과 동일)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끝.